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 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○ 「평생교육법」제2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'평생학습센터'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보장으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 (안 제14조)
 -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제공
-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매니저 배치 및 활동수당 지급 (안 제1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맞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.
- 현행 조례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는 <u>"평생학습관"</u> 관련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나, 2014.1.28. 신설된 법 제21조의21)에 따라 읍·면·동에 설치할 수 있는 <u>"평생학습센터"</u> 관련 규정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, (안 제14조) <u>"평생학습센터"</u>에는 학습매니저를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.(안 제15조제3항)
- 현재 영등포구는 지역별로 특화된 6개소의 "평생학습센터"(행복학습센터)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명의 학습매니저가 활동 중으로 활동수당 및 프로그램운영비 9,250만원(국비 3,150, 구비 6,100)이 2016 세입·세출예산에 편성됨.
- 이와 같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"평생학습센터"와 "학습매니저"의 운영 및 지원 근 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.
- O 기타, 잘못된 인용조문 삭제, 용어 수정, 조문위치 조정 등 미비된 부분을 정비 하였음.

구 분	현 행	개 정
제4조제1항 중	제5조 및 제6조	제6조
제8조 중	위원	위촉직 위원
제4장 성인문해교육	17조 앞에 위치	20조 앞에 위치

¹⁾ 제21조의2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읍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독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 문화교육, 시민참여 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「헌법」및 「교육기본법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바,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162 호 제출연월일 : 2016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제2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주민의 보편적 학습권리 보장으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생학습센터의 설치·운영 (안 제14조)

나.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 배치 등 (안 제1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원안동의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6.09.08 ~ 2016.09.28, 20일간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법 제5조 및 제16조"를 "법 제16조"로, "관련 기관 및 단체"를 "평생학습 동아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"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"위원"을 "위촉직 위원"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"평생학습관"을 "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"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3조(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
 - 2.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
 - 3.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 - 4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 - 5.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
 - 6.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· 제공 및 상담
 - 7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
 - 8.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
 - 9.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
 - 10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의 제목 "(운영직원 배치)"를 "(운영요원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 앞에 "제4장 성인문해교육"을 삭제한다.

제20조 앞에 "제4장 성인문해교육"을 삽입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혀 했 개 아 정

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구청장 은 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, 관련 기관 및 단 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.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장 평생학습관

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 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 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한다.

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
법 제16조
<u>평생학습 동아리,</u>
<u>관련 기관 및 단체 등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임기) <u>위촉직 위원</u>

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제13조(설치)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3조(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 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.
- 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
- 2.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 크 추진
- 3.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

- 제14조<u>(기능)</u> <u>평생학습관은 다음 각</u>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
 - 2.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 크 추진
 - 3.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 육 및 연수
 - 4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 - 5.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 발 운영 및 지원
 - 6.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· 제 공 및 상담

육 및 연수

- 4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- 5.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 발 운영 및 지원
- 6.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· 제 공 및 상담
- 7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
- 8.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 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
- 9.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및 관리
- 10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·운영)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 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- 7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
- 8.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 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
- 9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15조<u>(운영직원 배치)</u> ①、② (생략)

<u>〈신 설〉</u>

<u>제4장 성인문해교육</u> <u>제17조(생략)</u>

<u>〈신 설〉</u>

제20조(생략)

제15조<u>(운영요원 등)</u> ①、② (현행 과 같음)

③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 는 학습매니저 등을 둘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〈삭 제〉

제17조(현행과 같음)

<u>제4장 성인문해교육</u> 제20조(현행과 같음)